

학생취업지도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취업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학과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회 지도에 관한 사항
2. 동아리, 학생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
3. 학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5.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6. 재학생 및 졸업생 부업알선 업무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
제 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팀에서 하고, 간사를 둔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